

[별지 제7호서식]

발급번호:

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

- 대 표 자 : (생년월일)
- 농 장 명 : (축산업허가번호)
- 소 재 지 :
- 가축의 종류 :
- 방역기준 유형 :
- 살처분 제외 확인 내용

살처분 범위	살처분 제외 선택 확인 내용
반경 500m 이내 (관리지역)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살처분 제외 "가"유형만 해당
	<input type="checkbox"/> 살처분 수용
반경 500m 초과 ~ 3Km 이내 (보호지역)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초과 ~ 3Km 이내 살처분 제외
	<input type="checkbox"/> 살처분 수용
※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이 왕래하거나 장비(차량 포함)·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명할 수 있음	

○ 확인서 유효기간 :

「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」 제7조·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



발급 횟수 : 건 발행일자: 년 월 일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